

# 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가경정 제1회 수정1차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562,847,467	46,885,424
일반회계	1,096,817,970	32,904,539
특별회계	466,029,497	13,980,885
공기업특별회계	198,592,923	5,957,788
상수도사업	72,467,805	2,174,034
하수도사업	126,125,118	3,783,754
기타특별회계	267,436,574	8,023,097
공유재산관리	175,712,282	5,271,368
의료급여기금	4,505,234	135,157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기금운영	1,319,000	39,57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242,960	7,289
교통사업	43,788,726	1,313,662
철도건설사업	12,132,292	363,969
폐기물처리시설	6,163,954	184,919
도시재정비촉진	1,562,045	46,861
도시개발	14,152,779	424,583
기반시설 설치	7,857,302	235,719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와 같다. 단,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

제 3 조 2016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2016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344,602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16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31,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재해 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